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27

발의연월일: 2022. 3. 23.

발 의 자:김용판·최형두·서일준

김예지 • 최춘식 • 박대수

이주환 • 박덕흠 • 김영식

김성원 · 정운천 · 추경호

조명희 · 김승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자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의 경험을 가진 내국인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두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 2년간 많은 기업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수 있는 조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①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	
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	
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	
업일(<u>2022년 12월 31일</u> 이전인	<u>2024년 12월 31일</u>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	
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	l
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	
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	
일부터 계산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